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12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자동차조선과장 김성칠, 김종주 서기관 (2110-5634)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발표

– 납품단가 조정이 쉬워지고, 대금지급 기한은 짧아지고 –

□ 완성차업계 중심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부품업계 중심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0.12.15(수),**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업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함

○ 이날 협약식은 금년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를 활용하여 개최** 되었으며, **현대·기아, 르노삼성, GM대우, 쌍용 등 국내 완성차사와 완성차사별 협력사 대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대표로 서명에 **참여**

○ 아울러, 그간 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함

○ 이날 공개된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업계 스스로의 실천 약속**으로서 지난 9.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후 **단일 업종별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과 협력모델의 정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날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부품업체 등 협력사를 포함하는 **기업군 전체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계의 동반성장 노력을 당부

○ 특히, 친환경자동차 등장 등 최근의 시장환경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계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전제하고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은 물론,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접근력 지원 등 대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

□ 이날 발표된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① **원자재가 변동으로 인해 납품되는 부품의 전체가격이 5% 이상 변동시 납품단가 변경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함

○ **현재 부품업계의 영업이익이 4~5% 수준인 현실**에서 부품가격의 5% 이상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부품업계에서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따라서 원사업자와 납품업자간 원자재가 반영 협의 후 **원사업자는 가급적 원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품업계는** 원자재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안정적인 납품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② 또한, **단종된 차량의 A/S 부품의 납품단가**는 합리적 납품단가를 **“일정기간 단위로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간, 차량이 **단종된 부품의 A/S 부품 납품단가**를 **수년 전 가격으로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업계는 납품시기 변동에 따른 **원가상승분 등이 반영된 납품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경영환경이 호전**될 전망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구축〉

① 중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우선, **완성차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가능한 납품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현재 中企에겐 60일내 어음으로만 결제하고 있으나, 대기업에겐 90일 이상 어음도 결제

○ 특히,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원사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3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원사업자**는 어음으로 결제하더라도 **가능한 30일 내의 결제기한을 정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다만, **외국계 자동차회사**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대금 결제사항을 정하되**, 부품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②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 중심의 협력창구를 활성화**하기로 함

○ 우선,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추천이나 이자율 인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함

* 그간 이미 운영 중인 상생협력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보증기관의 엄격한 심사,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중소업계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완성차 업체와 2차 이하의 협력사 중심으로 **"(가칭) Auto 패밀리 데이" 등을 구성**하여 **동반성장의 노력이 2~3차 협력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그간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협력회가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운영되어 2~3차 이하의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그간 **업계 및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 업계의 밑바탕까지 전달**되어 **동반성장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전망

③ 그 외에도 원자재가 변동에 대응하여 시행 중인 **사급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해외 판로지원, 협력사의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이날 발표된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중소 부품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자동차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임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자동차업계는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동차업계가 대중소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업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

□ 지식경제부는 향후 **자동차업계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 수여**는 물론, **자동차분야 R&D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 끝.

붙임 : 1. 자동차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협약식 개요
2.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협약서
3.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붙임1>

「2010 자동차산업인의 밤」 및 「동반성장 협약식」 행사

□ **일시 및 장소 : '10.12.15(수) 18:00~19:30** (만찬 포함),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3층)

* 행사주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참석자** :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업계, 학계 및 언론 등 250명

□ **주요행사** : 개회식 후 **"자동차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 행사 세부일정 >

구 분	시 간	비 고
식전리셉션	17:30~18:00 (30분)	참석자 환담
기념촬영	18:00~18:02 (2분)	지경부장관, 업계대표 등
개회선언	18:02~18:05 (3분)	사 회
인사말씀	18:05~18:10 (5분)	윤여철 자동차협회 회장 (현대차 부회장)
동반성장 협약식	18:10~18:18 (8분)	협약서 서명
격려사	18:18~18:24 (6분)	지경부장관
영상물상영	18:24~18:40 (6분)	'10년 자동차산업동향
만 찬	18:40~19:30 (50분)	건배제의 : 자동차조합이사장
건배 제의	18:40~18:42 (2분)	자동차조합 이사장
내빈 소개	18:42~18:47 (5분)	정부, 업계, 유관기관등 대표
공 연	18:50~19:30 (40분)	-

<붙임2>

자동차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협약서

자동차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서

완성차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는 양 업계의 동반성장을 통한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완성차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는 양 업계간 동반성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완성차업계 및 자동차 부품업계 대기업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품단가의 합리적 책정, 현금지급 확대, 어음지급기한 단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완성차업계 및 자동차 부품업계 대기업은 중소 자동차부품업계의 기술향상, 글로벌 판로지원 확대 등 부품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자동차부품업계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자기혁신으로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완성차업계와 자동차 부품업계는 동반성장 노력이 2차 및 3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완성차업계와 자동차부품업계는 자동차산업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2010년 12월 15일

현대자동차 : ---------- 현대차 협력사 대표 : ----------
기아자동차 : ---------- 기아차 협력사 대표 : ----------
GM대우자동차 : ---------- GM대우 협력사 대표 : ----------
르노삼성자동차 : ---------- 르노삼성 협력사 대표 : ----------
쌍 용 자동차 : ---------- 쌍용차 협력사 대표 :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

<붙임3>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1.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호 협력 등 자동차업계의 자율적인 추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이드라인의 성격) 이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업계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한다) 등 기존 법령의 준수는 물론, 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제3조(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11개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협력' 관련 8개 분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조(당사자) 이 가이드라인의 당사자는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의 경우 당해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한다.

2. 공정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부품업체 상호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6조(납품계약) ① 자동차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시점은 최소한 협력업체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으로 한다.

②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로 개별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

제7조(발주) 발주처는 발주 물량을 수시로 발주할 경우 협력업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한다.

제8조(계약해제) ①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합의하여 정하되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09.8.12)을 준수한다.

② 계약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되 해제·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 2-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9조(납품단가) ① 납품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 방법·원재료가·시가를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이 체결된 후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자제하며, 납품단가 조정기준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되,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원사업자는 감액사유, 산정기준 등 합리적인 인하 근거를 서면으로 부품사업자에게 제시한다.

④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가산정 기준이 되는 임률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성 있는 단가를 제시하되, 작업여건, 협력업체의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한다.

⑥ 협력업체는 납품단가 인하에 이의가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단가조정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단가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용 부품) 부품사업자로부터 단종된 차량의 보수용 부품에 대한 납품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부품의 원재료비와 금형 제작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납품단가를 일정기간 단위로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원자재가 인상) 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납품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조정시기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사전 반영한다.

②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품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의 전체 원가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원사업자와 납품업자는 납품가격에 대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고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갱신 등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특정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부품업체에서 납품단가 계약 갱신 요청시 상호 협의하고, 그 원자재 가격의 인상 폭이 5%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일 경우라도 원자재가 인상분 반영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최소한 분기별로 원자재價 변동 추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價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단가결정이 지연되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2조(개발비용) ① 원사업자는 부품사업자의 개발비용 산정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나 테스트 비용 등 합리적인 개발비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자가 부품사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지급할 때, 부품사업자가 원할 경우 개발비용은 가능한 납품단가 지급과는 별도로 지급하되,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납기) ① 자동차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대기업은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4조(관리책임) ① 원사업자가 납품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후 원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납품 후 발견한 부품의 손실, 분실 등에 대해 부품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 납품업체에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제15조(품질문제) ① 출시된 차량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성차사는 부품사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소재를 상호 확인한 후 책임정도에 따라 분담률을 책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부품사업자로부터 품질 불량 책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원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대금결제) ① 납품물의 수령일로부터 가능한 60일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대금지급일을 정하고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② 완성차 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가능한 납품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납품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완성차사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인 원사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일에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이며 3,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어음을 발급하는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의 결제기한을 정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 3항에서 원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만을 전문적으로 납품하지 않는 사업자(비전문사업자)는 제외되며, 비전문사업자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⑤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게 완성차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결제조건보다 가능한 나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⑥ 신규로 설립되는 사업자 및 외국계 자동차 사업자는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상기 대금결제 관련 사항을 정하되, 부품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상호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자동차업계는 부품업체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능력 향상, 동반성장 노력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7조(자금지원) ① 대기업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기관의 별도심사가 필요한 펀드 등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직접적으로 협력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자동차산업 분야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③ 완성차社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부품社에 대한 대출보증이나 대출 추천, 대출이자 인하 노력 등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제18조(사급제도) 원사업자는 사급제도의 품목을 현행 대비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업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기술지도) ① 완성차사 및 부품업체 중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②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 향상지원은 1차 협력업체 외에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20조(인력양성) ① 대기업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주기적으로 협력사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협력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협력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협력사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 및 접수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한다.

③ 완성차업계는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공동으로 신차를 개발하는 Guest Engineering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2·3차 협력업체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주조, 단조 등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글로벌 판로지원) ①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시장 정보제공, 해외 바이어 연결 등 협력업체의 글로벌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② 대기업은 해외동반진출이나 구매상담회 등에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③ 완성차업계는 해외공장에 동반진출을 하거나 모기업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할 때 협력사를 대상으로 희망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제22조(정보제공) ① 자동차공업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자동차분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② 자동차부품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동율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부품업계에서 희망하는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원사업자는 부품사업자의 장비보유 여부를 평가할 때, 연구소나 대학에 구축된 공동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품사업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거래관행 점검) ① 원사업자는 정기적으로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 등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부당한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다.

②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동반성장 분야의 지원을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자체적인 협력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완성차업체는 동반성장 추진 관련 조직 등을 운영하여 동반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원사업자는 현재 협력사의 건의사항 수렴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력회(명칭 불문)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도록 한다.

* 2~3차 이하 업체가 중심이 되는 “(가칭) Auto 패밀리데이” 창설 등 교류 활성화 등

제24조(고충해소) ① 사이버 신문고 등 협력업체 고충접수 채널을 열어 불공정 거래 등 협력업체 고충사항을 상시 청취한다.

②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반성장 이행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